도시종합계획중 역사문화유명도시 보호계획

1. 베이징시도시종합계획(2004-2020년)

(1) 역사문화유명도시 보호원칙

○ 과학발전관의 관철 및 실현원칙을 견지하여 보호와 발전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

- 역사문화유명도시의 중요지위를 강화

○ 전체보호원칙 견지

- 시구역 및 옛도시의 역사문화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체계를 완결
- 옛도시를 중점보호하여 옛도시에 대한 전체보호를 견지

○ 인간본위원칙을 견지하여 소규모의 점진적 방식으로 기회있을 때 갱신하는 방법(有机更新的方法)을 적극적으로 탐색

- 정부주도하의 주민생활조건 개선과 고도풍모 보호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
- 평면성을 방지하고 '건설적파괴'가 야기하는 모순을 해결하여 거주인구를 소산하고 안전재해를 해소
- 총괄적인 역사문화자원계획을 수립하여 옛도시의 아름다운 공간질서를 재건

○ 적극보호원칙 견지

- 옛도시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제발전목표의 단편적 추구를 방지
- 문화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사업 및 문화·관광산업을 적극 발전시키서 발전활력을 증강하고 문화부흥을 촉진하며 옛성의 지속가능

발전을 추동

○ 보호업무메카니즘을 부단한 완결 및 창조원칙을 견지

- 역사문화문화유명도시 보호법제화과정을 가속적으로 추진

- 역사문화유명도시 보호관리메카니즘 및 체제의 조정 및 건전화

(2) 옛도시 전체보호

○ 롱딩문(榮定門)에서 종구로우(鐘鼓樓)까지 7.8㎞의 명청시대 베이징 도시의 중추선의 전통풍모특색 보호

○ 명청시대 베이징도시의 철(凸)자형성곽 보호

- 성곽옛터(城墻旧址)를 따라 일정폭의 녹지대(綠化帶)를 보존하여 성곽옛터의 환상녹지대(綠化环)를 상징적으로 형성

- 궁성, 황성, 내성, 외성의 4중성곽구조의 톡특한 도시양식 보호

○ 황성전체 보호

-「베이징황성보호계획」에 따라 보호·정비업무 전개

○ 옛도시내의 하천·호수수계 보호

- 중요한 역사적 가치있는 하천·호수를 부분적으로 복원하여 완전한 체계 형성

○ 옛도시 본래의 격자형(棋盤式)도로망 골격과 거리·골목양식 보호

○ 베이징특유의 '골목(胡同)-쓰허웨엔(四合院 베이징의 □자 전통주택양식)'의 전통건축양식 보호

○ 분구역(分區域)은 건축고도를 엄격 통제하여 옛도시의 평탄하고 광활한 공간형태 보호

○ 중요 경관라인(景觀線) 및 거리연변경관(街道對景)의 보호

- 경관라인 및 거리연변경관 보호범위내에서의 건설은 도시설계를 통하

여 고도, 규모(体量), 건축형태규제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, 경관보호에 영향을 주는 건축에 대해서는 끼워넣기건축(插建)을 엄금

○ 옛도시 전통건축색채 및 형태특징의 보호

- 옛도시내 청회색민가의 부각된 붉은담장(烘托紅墻), 황와(黃瓦)의 궁중건축군의 전통색조를 보호유지

- 옛도시내 새로운 건축형태 및 색채는 옛도시의 전체풍모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

○ 고목·유명나무 및 거목 보호

- 옛도시전통 특유의 거리·골목녹화 및 정원(院落)녹화의 유지 및 연속시켜서 녹색나무가 돋보이게 함으로써 건축 및 도시의 전통특색을 부각

(3) 옛도시의 보호 및 부흥

○ 옛도시(旧城) 보호, 중심성(中心城) 조정최적화 및 신도시(新城) 발전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옛도시의 기능 및 용량을 합리적으로 확정함

- 옛도시내의 발전에 부적합한 도시직능 및 산업을 완화하고, 옛도시전통공간특색에 적합한 문화사업 및 문화·관광산업을 장려

○ 옛도시 거주인구의 적극 소산

- 인구구조, 사회네트워크의 개선 및 연속문제를 종합고려하여 옛도시의 취업인구 및 거주인구의 소양을 승급시킴

○ 옛도시 보호 및 부흥에 적합한 불량주택(危房)개조모형을 적극 탐색하여 대량철거대량건설(大拆大建)을 중지

-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주택질평가·보호수리기준을 제정하여 불량주택의 점진적 개조, 안전재해 해소, 생활의 질 제고

- 옛도시의 건설총량 및 개발정도 엄격규제

- 위법건설과 역사문화풍모에 엄중히 영향을 끼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을

점진적으로 철거

○ 옛도시전통거리의 살결(肌理) 및 척도(尺度)를 보호하는 전제하에, 옛도시의 교통정책 및 도로망계획을 제정하여 옛도시보호·부흥에 적합한 종합교통체계를 구축 및 완성

○ 옛도시의 전체풍모 보호, 진실한 역사유물의 보전한다는 전제하에, 옛도시 시정기초시설의 기술표준 및 실시방법을 제정하고, 옛도시 보호·부흥의 시정기초시설건설모델을 적극 탐색

(4) 문화재보호기관의 보호

○ 세계문화유산보호업무를 진일보로 수행하고, 세계문화유산완충구역을 계속 획정하며, 명확한 관리 및 규제조치를 제정하고, 부적합한 보호규제가 요구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을 재건하거나 철거

○ 문화재보호기관의 보호업무를 수행하고, 각급의 문화재보호기관명단을 지속적으로 공포

- 문화자원의 배치 및 특색에 근거하여 보호 및 이용을 분류·진행
- 문화재보호기관은 '원지역보호원칙'을 견지

○ 문화재보호에서부터 주위의 역사환경 및 전통풍모까지 출발하고, 각급 문화재보호기관의 보호범위 및 건설규제지역을 획정 및완비하며, 건설규제지역내 보호규제요구에 부적합한 건축물 및 구조물을 점진적으로 정비·재건하거나 철거

○ 도시의 고고 및 지하문화재의 조사·탐사·감정 및 보호업무를 강화하고, 지하문화재매장구역을 지속적으로 획정함과 아울러 공포

- 지하문화재매장구역내 건설에 대해서는 선탐사발굴·후건설진행원칙을 견지
- 옛도시내 기본건설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문화재보호 유관법규에 의거하여 고고학적 조사·탐사업무를 강화

○ 공사예정보호정원(挂牌保護院落)에 대한 보호 및 수선을 강화하고, 보호정원명단을 지속적으로 조사 및 공표하며, 공사예정보호정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정하고 완비

- 공사예정보호정원은 문화재보호 유관법규에 의거하여 실시관리해야 함

○ 문화재보호기관의 각종 이동불가능한 문화재의 보통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미사정공표(尙未核定公布 아직 조사·결정하지 않았지만 공표하는 것)를 강화

(5) 우수근현대건축의 보호

○ 베이징의 우수근현대건축은 베이징근현대역사시기에 건조되고 도시발전역사를 반영할 수 있는 비교적 옛날 역사문화가치를 지닌 건축물 및 구조물을 말하며, 역사문화유명도시의 중요내용임

○ 우수근현대건축에 대한 감정, 보호 및 합리적 이용을 강화

(6) 역사문화보호구역의 보호

○ 역사문화보호구역의 조사, 획정, 공표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, 역사문화보호구역 보호계획을 적시에 수립

○ 기공표한 역사문화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보호계획에 의거하여 계획적 관리를 엄격하게 실시

○ 옛도시의 역사문화보호구역의 범위를 보다 확대

- 역사문화유물 분포현상 및 전통풍모의 전체상황에 근거하여 옛도시의 현존 역사문화보호구역의 확대·조정

- 새로운 역사문화보호구역의 추가

○ 역사문화건축의 보호 및 재이용을 강화

- 정원을 단위로 삼아 비교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옛저택을 보호 및

수선

- 전통골목 및 거리공간을 보호

○ 역사문화보호구역의 특징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역사환경보호 및 관련갱신방식을 채택하고, 역사문화보호구역의 거주 및 생활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

○ 역사문화보호구역내 보호규제요구에 부적합한 건축물 및 구조물을 점진적으로 정비·재건하거나 철거

(7) 시역사문화자원의 보호

○ 독자적인 자연지리형태 보호

- 도시 및 산수가 상호 조화된 형태를 보호유지하고, 역사문화유명도시 전체양식의 거시환경 보호

○ 시구역 및 주변지구의 역사문화자원 및 자연경관자원 보호체계 보호

- 역사문화적 맥락을 부각하고, 문화유산보호체계 형성

- 역사유물 및 그 환경을 중점보호하고, 그 문화적 함축성을 충분히 발굴

○ 각급 풍경명승구역(風景名胜區) 보호

- 풍경명승구역계획을 적시에 수립하고 계획에 의거한 계획적 관리를 엄격 실시하여 자연경관, 문화고적 및 생태환경을 보호

○ 도시발전과 밀접하게 상관있는 역사하천호수수계를 보호하고 보호범위의 획정과 정비 추가

- 성을 보호하는 하수계(護城河 : 해자)를 중점보호

- 고대수원수로(古代水源河道), 고대홍수방지수로(古代防洪河道), 풍치조림수역(風景園林水域) 및 중요 치수건축물(水工建筑物)을 중점보호

○ 요(遼), 금(金), 원(元), 명(明), 청(淸) 동시대의 베이징성지(北京城池)

천도과정중 유물의 역사유적 및 성지양식특징을 보호

○ 풍부한 각종 무형문화유산(非物質文化遺産)(예로서 전통지명, 희극, 음악, 서화(字畵), 복식, 묘회(廟會 : 재래시장), 전통가게(老字号) 등)을 발굴, 정리, 복원 및 보호하고, 전통문화정수를 계승발전하여 고대도시활력을 진작시킴

(8) 메카니즘 보장

○ 옛도시(旧城) 보호, 도시중심지(中心城) 조정최적화 및 신도시(新城) 발전의 총괄계획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, 옛도시보호의 실시메카니즘을 완결하며, 옛도시의 유지적인 소산을 촉진

○ 베이징역사문화유명도시 보호의 상관된 부대법규 및 정책 완비

- 「베이징역사문화유명도시보호조례」 및 상관법규 제정하고, 역사문화유명도시 보호와 상호 모순된 규제내용, 규정을 조정하여 법에 근거한 보호 및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

○ 건전한 옛도시 역사건축의 장기적 수선 및 보호체제를 구축

- 주택재산권제도 개혁을 추진하고, 주택재산권을 명확히하며, 보호계획에 따른 주민스스로의 개조·갱신을 격려하여 주택수선·보호의 주체가 되도록 함

- 아울러 주민의 외부이전, 주택매매 등을 완비한 관련정책을 제정

○ 옛도시의 행정경계 제한을 타파하여 역사문화유명도시 보호와 부조화를 이루는 행정관리체제를 조정하고, 각급 행정기관 및 시정부의 관련담당부서의 역사문화유명도시 보호에 대한 부담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함

○ 공개·공정·투명원칙을 준수하고, 제도화된 전문가토론 및 대중참여 시스템을 구축

(자료 : www.bjghw.gov.cn, 국무원 2004년 비준자료)

<참고 1>

베이징시도시종합계획 목차

(北京市城市總体規划 2004-2020, 2004년 비준)

제1장 총칙

제2장 도시성격, 발전목표와 전략

제3장 도시규모

제4장 도시공간배치와 도시농촌조화발전

제5장 신도시(新城) 발전

제6장 도시중심지(中心城) 조정특화

제7장 역사문화유명도시 보호

제8장 산업의 발전 및 배치유도

제9장 사회사업발전 및 공공서비스시설

제10장 생태환경건설 및 보호

제11장 자원절약, 보호와 이용

제12장 시정기초시설

제13장 종합교통체계

제14장 도시종합방재·감재(减灾)

제15장 단기발전과 건설

제16장 계획시행

<참고 2>

베이징역사문화유명도시 보호계획

(北京歷史文化名城保護規划 2002. 9. 18 제정)

< 목 차 >

1. 총칙
2. 계획준거
3. 계획의 지도사상 및 이념
4. 문화재보호기관 보호
5. 역사문화보호구역 보호
6. 옛도시전체양식 보호
7. 역사하천·호수수계 보호
8. 도시중추선 보호 및 발전
9. 황성역사문화보호구역 보호
10. 명, 청 북경성 철(凸)자형 성곽평면의 보호
11. 옛도시의 격자형도로망 및 거리·골목양식의 보호
12. 옛도시건축고도 규제
13. 도시경관선 보호
14. 거리연변경관 보호
15. 옛도시건축형태 및 색채의 계승 및 발양
16. 고목·유명나무 보호
17. 옛도시의 시급한 개선과 옛도시 보호
18. 전통지명 보호
19. 전통문화, 상업의 보호 및 발양
20. 보장조치의 실시

2. 시안시도시종합계획(2008-2020년)

○ 역사문화유명도시의 전체보호를 핵심으로 도시의 조화발전을 목표로 계획하고, 보호우선·유기갱신원칙을 견지하며,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중시하고,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전체보호를 강조하며, 우수전통문화를 선양하고, 전통공간양식 및 풍모(傳統空間格局和風貌), 문화재고적(文物古迹), 대유적지(大遺址), 하천호수계(河湖水系) 등을 중점보호하여, 서안고도로서의 특색을 체현하고, 도시건설과 역사문화유명도시 보호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

○ 옛성의 전체보호를 강조

- 옛성내는 역사도로지구(歷史街區), 인문유물(人文遺存)을 보호 및 복원
- 1환环(성곽 城墻), 3편片(베이위엔문(北院門), 싼쉬에거리(三學街), 치셴좡역사문화거리지구(七賢庄歷史文化街區)), 3가街(샹즈먀오가(湘子廟街), 더푸가(德福街), 주써가(竹笆街))와 문화재보호기관, 전통민가(傳統民居), 근현대우수건축물, 오래된나무(古樹名木) 등 조직적인 보호체계를 형성
- 용지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고성의 도시기능을 개선하며, 고성의 활력을 증강하고, 일련의 보호조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서안고성을 '고성곽(古城墻)은 있으나 옛성(古城)은 없는 상황'으로 개조하며, 옛성 특색의 조화로운 서안을 구비하도록 구축

(자료 : Tranbbs.com, 자료갱신 : 2009. 6. 3)

3. 뤄양시도시종합계획(2008-2020년)

(1) 유명도시 보호원칙

○ 문화유산보호우선원칙을 견지하에 도시발전과의 관계를 좋게 처리

○ 역사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, 도시역사경관을 연속시키며, 문화재

전시를 강화

○ '보호위주, 응급처치우선, 합리적이용, 관리강화'의 문화재보호방침을 관철

○ 역사적 진실성을 보호하고, 재건을 제창하지 않음

○ 장기, 단기 결합에 입각하여 핵심을 부각

(2) 유명도시 보호목표

○ 전체목표 : 뤄양의 역사문화유산을 보호·이용하여 도시의 사회, 경제, 문화적 지속가능발전을 촉진

○ 단기적으로는 문화재, 고적, 대유적지의 응급처치 및 보호를 위주로 하고 역사문화거리구역은 보호정비하며, 장기적으로는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및 전시를 강화하고 문화산업 및 관광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연사문화유명성으로서의 가치 및 지위제고를 추진

(3) 전체보호틀

○ 전체적 측면, 역사도시구역, 역사문화거리구역, 문화재보호기관, 근현대공업유산 및 가치있는 역사건축물, 무형문화유산(非物質文化遺産) 및 문화노선(文化路線)의 보호를 포함

(자료 : lysghj.gov.cn, 공시기간: 2009. 8. 1～8. 30)